

	포상 규정	문서번호	MSU-
		제정일자	2012. 4. 16.
		최종개정일자	2015. 3. 4.
		담당부서	행정지원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교직원에 대한 공적과 선행을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의 포상
2. 공로상
3. 장기근속상
4. 모범상

제3조(정부의 포상추천) ①포상 대상자 추천은 정하여진 포상서열에 의한다.

②포상서열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정한다.

1. 교육경력 매 3년마다 5점으로 계산하여 최고 50점까지 평정한다.
2. 대학 재직 매 2년마다 5점으로 계산하여 최고 50점까지 평정한다.
3. 제1호, 제2호를 합산하여 고득점자로부터 서열을 정한다.
4. 제3호 결과 동점자가 있을 때는 연장자를 우선한다.

③재직년한의 산정은 대학에서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4조(추천제한) 정부의 포상 심사대상자로 추천되었거나 정부의 포상서열에 의한 피 추천권을 사양(양보, 기권)한 교직원은 수상 여부에 관계없이 당시 재직하는 교원 또는 직원의 추천이 모두 끝난 후가 아니면 다시 추천할 수 없다. 다만, 퇴직으로 인한 포상추천은 본 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공로상) ①대학에 재직하고 정년퇴임하는 교직원은 총장이 다음과 같이 포상한다.

- 정년퇴임하는 교직원 : 공로패 및 기념품<개정 2015.3.4>

②당년도에 공로상과 장기근속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장기근속상 수상과 병행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장기근속상) ①대학에 재직 중 특별한 과오 없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다음 각 호의 교직원에게 총장이 포상한다.<개정 2015.3.4>

1. 10년 근속한 교직원 : 기념패 및 기념품<개정 2015.3.4>
2. 20년 근속한 교직원 : 기념패 및 기념품(순금 3돈)<개정 2015.3.4>
2. 30년 근속한 교직원 : 기념패 및 기념품(순금 5돈)<개정 2015.3.4>

③장기근속상 근속년수는 직종에 관계없이 대학에 부임하여 근속한 기간을 계상하며, 시간강사, 특수신분교원, 명예교직원은 제외한다.

④재직연한의 산정은 대학에서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그 해년도 3월 2일을

만료점으로 한다.

제7조(모범상) ①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장 또는 총장이 포상할 수 있다

1.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업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때
2.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다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될 때
3. 재해, 기타 손일을 사전에 예방하여 뚜렷한 공적이 인정될 때
4. 대내외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현저히 드높였을 때

②모범상은 표창장과 부상을 줄 수 있다.<개정 2015.3.4>

제8조(포상대상 제외) 포상대상자가 휴직 중 이거나 교직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포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9조(정부포상대상자 결정) ①포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1. 위원회는 총장이 추천하는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총장이 선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간사 1인(서무과장)을 둔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위원장은 시상 20일 전까지 포상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심사사항) 공적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공적의 내용이 포상목적 및 방침과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내용이 질적, 양적인 면에서 뚜렷하고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
3. 포상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
4. 기타 사항(기 포상여부, 근무연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등)

제11조(포상업무 주관) ①교직원의 포상업무는 행정지원처에서 주관한다.

②제9조②항 결정된 자는 공적조서<서식 1>, 인사기록요약서<서식 2> 및 포상에 대한 동의서<서식 3>를 작성하여 행정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상) 시상은 개교기념일 또는 특정 행사시 병행한다.<개정 2015.3.4>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1>

공 적 조 서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공적기간		주민번호			
◆ 주요경력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 과거포상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첨부 : 공적사항 1부				확인	소속 : 성명 : 인
20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 성명 : 인					

공 적 사 항

※ 육하원칙에 의할 것.

<서식 2>

교직원인사기록요약서

소속기관			직 위		3) 직 급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연 락 처			
구 분	☐ 교 원 ☐ 직 원					

구 분	재 직 기 간	비 고
합 계 ㉔		

제외기간		
합 계 ㉕		

실 재직기간 (㉔ - ㉕)		추천훈격	
------------------	--	------	--

징계, 형벌	종 류	일 자	과거포상 (모범,총리 표창 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작 성 자 (인사담당자)			확 인 자 (인사담당부서장)		
직 급		성 명		직 급	성 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직인					

포상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 소 속 :
- 직위(급) :
- 성 명 :

☐ 포상추천 훈격 :

☐ 동의내용

상기 본인은 년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추천기관 및 향후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20 . . .

소속 목포과학대학교

직위(급) 교수

(날인)